교육방송국 규정

2010.7.16. 개정
1999.10.1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방송국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교육방송국(이하 "방송국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목적) 본 방송국은 본 대학의 언론기구로서 본 대학의 독특한 대학문화 창달, 학내외 공지사항의 보도, 수원여대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대외적인 홍보 활동 등을 하며, 본 대학의 설립 정신에 부응하여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언론 및 문화 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위치) 본 방송국의 위치는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2장 지위 및 구성

제5조(지위) 방송국은 총장 직속 대학부속기관이다. <개정 2010.7.16.>

제6조(조직 및 임원 구성) ① 방송국의 구성은 국장, 주간교수, 정국원, 수습국원으로 이루어지며, 국장은 총장이 맡고, 주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0.7.16.>

② 학생 실무조직으로 총무부, 보도부, 아나운서부, 기획제작부, 기술부, 영상 모니터부 등의 부서를 둔다.

③ 각 부서에는 부장과 차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실무국장을 둔다.

④ 위 명기된 조직이나 국원 외에 방송국에서 필요할 경우 주간교수와 상의하여 별도 부서 또는 국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임원 선출 및 시기) 실무국장 및 각 부서장은 매년 2월 마지막 주 전까지 정국원 들의 추천으로 주간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재가를 얻는다. <개정 2010.7.16.>

제3장 국원의 선발과 구성원의 역할

제8조(선발 및 자격) ① 국원은 본 대학 학생 중에서 소정의 시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, 기자의 능력에 따라 1학기에서 2학기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국원에 임명된다.

② 학기 중 수습국원의 결원 및 증원 등으로 재 선발을 요할 때는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 선발할 수 있다.

제9조(역할) ① 총장은 방송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 <개정

2010.7.16.>
② 주간교수는 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 활동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.
③ 실무국장은 방송국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 진행권을 가짐과 동시에 국원들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.
④ 총무부는 예산 업무를, 보도부는 보도 관련 업무를, 기획제작부는 각종 방송관련 기획 업무를, 영상모니터부는 영상방송활동 관련 업무를, 문화부는 문화 활동 관련 업무를, 아나운서부는 방송활동을 주로 맡는다.

제4장 의무와 권한

제10조(의무) ① 국원은 대학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
② 공정한 보도와 활동으로 창의적이고 건전한 대학문화 형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
제11조(권한) ① 국원은 정국원이 되면서 국원증을 발급 받으며, 활동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된다. 단,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.
② 국원은 활동에 대한 일정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, 활동비 지급은 예산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 세칙에 따른다.
③ 국원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, 교육비는 방송국 예산에서 지원한다.
④ 기존 조직 이외의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조직 구성 시 별도규정을 첨가한다.

제5장 활동

제12조(활동) ① 방송국 활동은 평일 교내 방송과 TV방송, 인터넷 방송 등 일반 방송 활동과, 학생들의 정서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음악 감상제, 방송제 등의 특별활동으로 나뉜다.
② 평일 방송 시간은 아침, 낮, 오후 방송을 할 수 있으며, 방송 시간 변경 시 주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장 회의 및 의결

제13조(회의 및 의결) 방송국의 회의는 국원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, 주간교수의 전결로 처리한다. 단,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 <개정 2010.7.16.>

제7장 예산 및 회계 운영

제14조(예산 및 회계) ① 방송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학교 지원금, 찬조금, 학생 자치회비 등으로 운영되며, 자치회비 금액의 결정은 매년 주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7.16.>
② 예산 관리는 학교에서 하며, 총무부장은 매번 지출되는 예산에 대하여 실무 국장과 주

간교수의 결재를 받는다.

③ 주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운영비용을 총무부장으로부터 가지급 신청을 받아 기안된 금액을 가지급할 수 있으며, 총무부장은 사용 내역에 대한 공신력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 결재선에 의거 정산보고를 진행해야 한다. 증빙서류 총 사용금액과 내역 총액이 일치하여야 하며, 사용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않고 학보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. 또, 이에 대한 사항은 정산보고에 보고되어야 한다. <신설 2010.7.16.>

제8장 포상 및 징계

제15조(포상) 국원이 방송국 및 학교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될 때 주간교수가 포상하거나, 학교에 추천하여 총장이 포상한다. <개정 2010.7.16.>

제16조(징계) ①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, 대내외적으로 방송국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, 학생 기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학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명한다.

② 기타 방송국 자체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국원 상호 간에 불신과 불화를 조장할 경우 정국원 회의를 거쳐 경고를 받으며, 3회 이상 경고 시 제명한다.

제17조(적용)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 시행세칙이나 통상 관례에 따르며, 개정이 필요할 시 실무국장은 기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주간교수와 협의하여 개정한다.

제18조(시행 세칙) <삭제 2010.10.1.>

제9장 업무 절차

제19조(결재선) 모든 교육방송국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의 결재선은 아래 사항대로 정한다. <신설 2010.7.16.>

구 분	문서 양식	결재선
회 계	가지급 신청	총무부장 - 방송국장 - 주간교수 - (총장)
	정산 보고	총무부장 - 방송국장 - 주간교수 - (총장)
	일반 운영비	총무부장 - 방송국장 - 주간교수 - (총장)
기 타	일반 품의	총무부장 - 방송국장 - 주간교수 - (총장)
	회의 결과보고	총무부장 - 방송국장 - 주간교수 - (총장)

제20조(문서 양식) 문서 양식은 별도 서면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 문서 양식은 주간교수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다. <신설 2010.7.16.>

제10장 교육 훈련

제21조(교육훈련) 기자,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으로서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방송국

에서는 주간교수 판단 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.
① 교육방송국 운영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워크숍, 특강, 연수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비용은 교육방송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.
② 전문방송인로서의 글로벌 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외 산업체(방송국 등)나 대학, 유명관광지등 해외 탐방 및 취재를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0.7.16.>

제11장 기타

제22조(시행 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간교수의 결정 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0.7.16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